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사·조사 불응 등에 대한 형벌규정 합리화〉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07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감사·조사 불응 등에 대한 형벌규정 합리화(안 제24조 삭제 및 제26조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소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24

다. 회 부 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차관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사·조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하여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또는 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공차관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적 통제수단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재체계의 정합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불응, 조치·명령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24조 삭제 및 제26조 등).

Ⅲ. 검토의견

1. 감사·조사 불응 등에 대한 형벌규정 합리화

(안 제24조 삭제 및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현행 제24조) <u><신설></u>	<u><삭제></u>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 제26조 제1항 신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차관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공공차관이란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위자재를 말함¹⁾.

「공공차관법」은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²⁾.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에 대하여 공공차관사업의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하거나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 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공공차관법」은 이러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와,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공차관”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對外)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한다.

2)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도입하려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借款額), 예상 대주, 차관 조건,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별 차관액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사업별 차관 조건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3. 사업별 내용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공공질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또는 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을 위하여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행정조사·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행정형벌 경감 관련 법률 개정 사례]

제명	시행일	위반행위	종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25.4.23.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사 교육 명령을 위반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프트웨어 진흥법	25.4.23.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유사 표시를 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5.7.22.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다만 1999년에 외환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및 내수침체 대응과 경제구조 조정을 위하여 공공차관이 도입된 이후로는 현재까지 공공차관이 도입된 바 없어, 현재 행정벌 완화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자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공공차관 도입 현황]

연도	차주	공여자	차관액	사업내용
1999	한국산업은행	일본수출입은행	미화 10억불 상당 엔화	사회간접자본사업(SOC), 에너지절약사업, 환경보전사업 및 한·일협력사업 등의 지급
1998	중소기업은행	일본수출입은행	미화 13억불 상당 엔화	중소기업 시설자금 및 중장기 운전자금 지급
	한국전력공사		미화 8억불 상당 엔화	발전소 건설, 송배전설비 및 보수기자재 수입
	한국가스공사		미화 2억5천만불 상당 엔화	LNG 저장 터미널 건설, LNG 연료 수입대금
1998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4,000백만불	금융부문 구조조정
			15백만불	금융부문 기술지원 (성업공사 기구강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지원사업)
1998	정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48백만불	금융·기업구조조정 기술지원
	산업은행	미국수출입은행(EXIM)	2,000백만불	무역금융지원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부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한 감독 및 제반 의무 준수는 행정 제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삭 제>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양벌규정) ----- ----- ----- ----- 제22조 또는 제23조의 ----- ----- ----- ----- ----- ----- ----- -----.
제26조(과태료)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현행	개정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u>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u> 2. <u>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4조 및 제2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160